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63호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27-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25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○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 (최초결정고시)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	은평구 불광동 227-7번지 일대	47,788	2026. 7. 24.까지*	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37호 (2019.7.25.)

*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기간(정비구역 지정·고시된 날부터 5년)으로부터 2년 연장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을 요청한 바, 역세권 주변 노후·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☎02-2133-7060) 및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(☎02-351-747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